

# 2018년 임금피크제 노사합의서

서울시복지재단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서울시복지재단지회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2018년 임금피크제 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임금피크제는 일반직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단, 임금피크제 도입 당시(2017.1.1.일자) 적용 제외된 직원(공무직)은 제외한다.
2. 임금피크제 적용시기는 정년을 맞는 해로부터 2년전부터 적용한다.
3. 임금피크제 기간 중의 임금은 임금피크제 적용 전 직전년도 기본급과 직책수당을 기준으로 1년차에 95%, 2년차에 90%, 3년차에 85%를 지급한다.  
단, 연도별 임금 인상률(액)은 당해연도 연봉책정 기준에 따라 별도로 적용한다.
4.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절감재원을 바탕으로 정년도래 인원에 따른 신규채용 규모에 따라 신입직원을 채용한다.
5. 신입직원 인건비는 임금피크제 절감재원으로 우선 충당하고, 절감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존 직원 총인건비 인상분 등에서 충당한다.
6. 임금피크제는 매년 노-사 합의에 따라 실시한다.
7. 본 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취업규칙 관련 제규정의 개정(신설)에 대하여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

2017. 12. 27.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남기철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서울시복지재단지회장 나도철